

이해충돌이란?

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
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
적용대상 → 모든 공직자

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, 국·공립학교 교직원,
공무수행사인*

*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

직무관련자

1

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**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**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... 인가, 허가, 면허, 등록, 특허, 인증 등

2

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**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**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... 단속, 조사, 감독, 부담금·과태료 부과 등

3

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**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**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... 공사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

4

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**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**
... 산하기관, 피평가기관,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

사적이해관계자

0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*)

*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02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·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

03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·법인·단체

04 공직자로 채용·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·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·법인·단체

05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, 출자지분 총수의 30%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법인·단체

0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·국장·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·감독했던 퇴직공직자

07 공직자를 지휘·감독하는 상급자

08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,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

[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]

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·제출 의무

1.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신청

- 신고의무자** 공직자
- 신고의무발생**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
- 신고의무발생**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
- 위반 시 제재**
-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-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

4.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
- 신고의무자** 공직자
- 신고의무발생**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*, 특수관계사업자**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(금전거래, 부동산거래,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)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
- *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**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, 출자지분 총수의 30% 이상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
- 신고방법** 안 날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
- 위반 시 제재**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.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
- 신고의무자**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
- ※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
- 신고의무발생**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*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
- *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- 신고방법** (보유) 안 날부터 14일 이내
(매수) 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
- 위반 시 제재**
-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-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

5.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- 신고의무자** 공직자
- 신고의무발생**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(최근 2년 이내)인 직무관련자와 골프, 여행,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
- 신고방법**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
- ※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
- 위반 시 제재**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3.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
- 제출의무자** 고위공직자
- ※ 「공직자윤리법」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'재산공개' 대상자
- 제출의무발생** 임용(임기 개시)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
- 제출방법** 임용(임기 개시)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* 제출
- * 재직했던 법인·단체와 업무내용, 대리·고문·자문 내용, 관리·운영했던 사업·영리행위 내용 등



**HAECHI
SEOUL**

서울특별시
SEOUL METROPOLITAN GOVERNMENT

[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]

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·금지 행위

1.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

제한대상자 공직자

제한행위

-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, 조인·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-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 - ※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
-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인·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④ 외국외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
-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
 - ※ ②④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

위반 시 제재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. 가족 채용 제한

제한대상자 공공기관(산하기관, 자회사 포함)

제한행위

- 다음의 가족*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
-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
 -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
- *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위반 시 제재 (고위공직자,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·유도·묵인한 경우)
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3.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

제한대상자 공공기관(산하기관, 자회사 포함)

제한행위

-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
-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
 -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
 -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임원 소속 국회의원
 -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·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
 -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*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·단체,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**
- *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**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, 출자지분 총수의 30% 이상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

위반 시 제재 (고위공직자,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·유도·묵인한 경우)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.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

금지대상 공직자

금지행위

-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건물·토지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는 행위

위반 시 제재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

5.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
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
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

공직자



본인·제3자의
재물·재산상 이익
취득 금지

위반 시

- 7년 이하의 징역
- 7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재물·재산상 이익 몰수·추징



본인·제3자의
사적이익을 위해
이용

위반 시

- 3년 이하의 징역
-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제3자



부정한 방법으로
취득하고 이를
이용해 재물·재산상
이익 취득 금지

위반 시

- 5년 이하의 징역
-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재물·재산상 이익 몰수·추징

※ 미공개정보

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되기 전의 것